

「평창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8월 26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2024년 9월 5일 회부
- 상정일자: 제29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4년 9월 5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가족복지과장)

가. 제안이유

- 어르신들에게 이·미용비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청결한 품위 유지 및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노인복지를 시행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노인 이·미용비 지원(안 제4조 및 제6조)
 - 대상: 75세 이상 노인
 - 조건: 평창군 내 주민등록 및 실거주
 - 내용: 월 1만원씩 이·미용비 지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영옥)

※ 검토보고서 전문 [붙임 1]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 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사항: 「없음」

붙임 1. 평창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2. 평창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평창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평창군수
- 제안일자 : 2024. 8. 26.
- 회부일자 : 2024. 9. 5.
- 상정일자 : 2024. 9. 5.

2. 제안이유

- 어르신들에게 이·미용비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청결한 품위 유지 및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노인복지를 시행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노인 이·미용비 지원(안 제4조 및 제6조)
 - 대상: 75세 이상 노인
 - 조건: 평창군 내 주민등록 및 실거주
 - 내용: 월 1만원씩 이·미용비 지원

4. 검토의견

가. 관련 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에서 ‘지자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명시된 경우에만하여는 보조 및 공금을 지출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음.

나. 입법의 취지

- 관내 어르신들에게 이·미용비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청결한 품위 유지 및 건강한 노후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노인 보건복지를 향상하고자 하는 것임.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6조(노인 이·미용비 지원)를 신설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의 노인분들에게 매월 1만원의 이·미용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5. 종합검토의견

- 우리 군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어르신들이 존경받으며 쾌적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이·미용비를 보편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취지는 인정되고, 상위법에 근거하였으며 노인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은 자치사무이므로 제정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됨.

다만, 조례안에 따른 보편적 지원사업 시행에 앞서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¹⁾ 등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평창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사업계획

<사업 개요>

- 지원대상: 관내 주민등록 및 실거주하는 75세 이상 노인(약 5,900명)
- 지원내용: 이·미용비 월 1만원씩 지원(연 12만원)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 사 용 처: 관내 이·미용 업체 중 가맹점 신청 업소(99개소 업소 중 모집·접수)
- 사용방법: 충전식 선불카드 지급, 반기별 또는 분기별 충전
- 비 고: 연말 미사용 금액 환수하여 세입 처리

1)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붙임 1 관계 법령

□ 노인복지법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붙임 2 강원특별자치도 어르신 아·미용비 지원 현황

시·군	근거 조례	시행일	대상자	대상인원	지원금액	지급방식
강릉시	강릉시 어르신 아·미용비 지원 조례	2018.12.12.	65세↑ 기초수급자	4,000명	8만원	이용권
고성군	고성군 노인 목욕비 및 아·미용비 지원 조례	2022.09.14.	70세↑	5,120명	10만원	카드
정선군	정선군 초고령 어르신 목욕 및 아·미용 지원 조례	2022.12.12.	70세↑	8,000명	12만원	이용권
영월군	영월군 어르신 목욕 및 아·미용비 바우처 지원 조례	2023.09.15.	75세↑	5,850명	12만원	카드
화천군	화천군 어르신 아·미용 지원 조례	2023.09.20.	70세↑	4,000명	12만원	카드
횡성군	횡성군 노인 목욕비 및 아·미용비 지원 조례	2023.12.20.	70세↑	4,500명	10만원	카드

붙임 3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결과(보건복지부)

[신설] 평창군 어르신 아·미용비 지원사업 (강원 평창군)

검토결과	협의 완료
필수 검토사항	<p>○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근거, 협의기준에 따른 검토 결과 ‘협의 완료’</p> <p>- 단, 시설입소자 및 유사사업(타 방문목욕서비스 및 목욕비 지원 등)의 수혜대상자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여 중복 수혜를 방지해야 함.</p>

※ 평창군 협의 요청(2023. 6.) ⇒ 보건복지부 협의 결과 회신(2023. 11.)

- 지원기준: 만 7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 대상규모: 약 600명

평창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4
----------	-----

제출년월일 : 2024. 8. 26.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노인 이·미용비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평창군에 주민등록된 75세 이상 어르신들 모두에게 이·미용비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청결한 품위 유지 및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노인복지를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원내용에 '노인 이·미용비'를 신설함(안 제4조)
- 나. 종전의 '지원한다'를 '지원 할 수 있다'로 변경함(안 제5조)
- 나.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항을 신설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
- 나. 예산조치 :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4.7.15. ~2024.8.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평창군 공고 제2024-1008호, 가족복지과-2319(2024. 7. 15.)호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기획예산과-892(2024. 7. 12.)호]
- 3) 부패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기획예산과-892(2024. 7. 12.)호]
-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가족복지과-2124(2024. 7. 12.)호]
- 5) 법제심사 : 적정 [기획예산과-2304(2024. 8. 6.)호]
- 6)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원안의결[기획예산과-2797(2024. 8. 14.)호]

평창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노인 이·미용비

제5조 본문 중 “지급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노인 이·미용비 지원) 군수는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 노인에게 월 1만원씩 이·미용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설입소자 및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는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노인복지법

[시행] 2024. 8. 7.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 요인 : '평창군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 관련조문 : 「평창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6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평창군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사업'은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 노인에게 월 1만원씩 이·미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로 시행하며, 사업운영에 필요한 지원비와 제반 비용(홍보비, 카드 수수료 등)이 소요됨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총 소요액	193,800	751,440	799,920	896,880	969,600	
대상자(명)	5,700	6,200	6,600	7,400	8,000	
세출	지원비	171,000	744,000	792,000	888,000	960,000
	제반비용(홍보비, 카드수수료 등)	22,800	7,440	7,920	8,880	9,600

다. 재원조달 방안 : 자체재원(군비)

3.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기획재정국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연락처	(033) 330 - 2124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출		193,800	751,440	799,920	896,880	969,600	3,611,640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193,800	751,440	799,920	896,880	969,600	3,611,640
재원 조달		193,800	751,440	799,920	896,880	969,600	3,611,64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93,800	751,440	799,920	896,880	969,600	3,611,640
	지방세(군비)	193,800	751,440	799,920	896,880	969,600	3,611,64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